

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·중개업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5일
상 호				
연락처	전화번호	팩스번호	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		

「방위사업법」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·중개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방위사업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·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2.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*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중개업·수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생략 가능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함 [], 동의하지 않음 []

*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